

1. 개정이유

장기요양급여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% 수준('23년 총 28,366개소 중 1,375개소)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,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정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바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상 부당청구 자진신고 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따른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(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2] 일반기준 라목 개정)

- 1)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자가 점검과 자율시정 기회 제공으로 부당청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, 자진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나 법 제37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2 제1호라목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)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2)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행정처분의 기준(제29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 1)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)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) 삭제 <2019. 6. 12.>	행정처분의 기준(제29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나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) <u>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.</u> 2) <u>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</u> 3) (좌 동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98